

### ●환경부공고제2020-976호

「하천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환 경 부 장 관

#### 「하천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# 1. 개정이유

지난해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 개정(대통령령 제30095호, 2019.9.24. 개정, 2019.10.1. 시행)에 따라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하천수 수열에너지 활용에 따라 부과할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가 정해지지 않아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# 2. 주요내용

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(제57조제2항 관련) [안 별표 3의2]

수열에너지로 활용하는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를 기존 발전용수 단가(1만세제곱미터당 63.3 원)와 동일하게 규정함

##### 3. 의견제출

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물산업협력과장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산업협력과(전화 : 044-201-7641, FAX : 044-201-7630, 전자우편 : [jcjy@korea.kr](mailto:jcjy@korea.kr)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기타 필요사항

##### 4.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, 법령 ⇒ 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●환경부공고제2020-978호

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26일

환 경 부 장 관

####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# 1. 제정이유

석면 잔류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감리부실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